

October 27,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57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10. 19. ~ 10. 23.)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1]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마련

2020. 10. 18. 금융위원회는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 ②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③ 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절차 마련, ④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등이 있음

[\[참고자료\]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금융위2]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

2020. 10. 19.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등을 추진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②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③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 있음

[\[참고자료\]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 발표](#)



[\[참고자료\]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



[금융위3]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 회의 관련

2020. 10. 20. 금융위원회는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 회의에서 오픈뱅킹 인프라를 보다 고도화하는 방안과 빅테크/핀테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오픈뱅킹 문호를 더 넓게 개방하고 금융신산업 등과 연계성 강화, ②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 간 상호 호혜적 관계 정립 및 오픈뱅킹 서비스에 대한 보안 관리 강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개보위] 중소기업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추진

2020. 10.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법령해석 서비스 지원, ② 가명처리 테스트베드

운영, ③ 중소기업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추진 등이 있음

[참고자료] 중소기업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추진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포 법안

[산자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2020. 10. 20. 산자부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국내 산업 및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차원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에 기여하고자 동법을 개정하고자 함

> 입법예고 법안

[산자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2020. 10. 21.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권 희석 우려없이 투자유치가 가능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창업주의 사익추구 등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발행 요건과 보통주 전환 요건, 보고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근거 마련(안 제16조의 8 신설), ②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및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요건 마련(안 제16조의9 신설), ③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보고의무(안 제16조의10) 등이 있음

[행안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2020. 10. 22.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중복심사를 최소화하고, 지방재정공시 심위원회의 경우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대(안 제37조제2항), ②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타 위원회로 하여금 대행(안 제60조제3항) 등이 있음

> 법률 발의안

[정무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과방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1인)」

적절한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적정 주파수 가치가 기준을 가지지 못한 채 논란이 확대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상향 입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수조원에 달하는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기재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17인)」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완화시키고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투자방식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이를 장려하는 제도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장기투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방안의 일환으로 보유 기간별로 양도소득세율을 세분화하고 오랜 기간 보유할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및 나목)

[기재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과 함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납세자로 과세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함. 이와 함께 대주주 요건인 당해 법인 주식의 보유 금액이 2018년 이후 2차례 하향조정되었고, 2021년에는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 될 예정으로 금융 투자자들의 불만과 주식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주주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주식의 보유금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기재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시행초기임을 이유로 성실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하여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세법상 의무를 장려하기 위한 면제 조항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현재 기한 없는 가산세 면제 조항을 두는 것은 국내 사업자를 차별하고 국외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이라는 점, 현재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했지만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가산세는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인 동시에 예방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 전자적 용역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를 불이행하는 간편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제재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협력 의무를 불이행한 국외 사업자에게 면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 이에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면제 조항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고용증대세제는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아 특례범위가 제한되어 상시근로자를 증가시켜도 추가적으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고용창출효과도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조세지출 간 중복은 허용되었지만 최저한세 적용으로 중소기업은 고용증대세제보다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격려하고 고용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함(안 제132조제1항제3호)

[산자위]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집적단지 육성 및 개발을 위한 ‘집적단지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을 마련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 적용,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노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등11인)」

저공해자동차 이월·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며, 보급목표제 미달성시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반납된 폐배터리가 정부 소유임에 따라, 오히려 민간의 재활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하여 폐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내 수소차 관련 전산망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치·운영 중인 충전인프라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Chong-Ah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